

2025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2026. 2.

상주시 옴부즈맨



2025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2026. 2.

상주시 옴부즈맨

인사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주시 옴부즈맨 제도는 2016년 처음 시행한 이후 어언 9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상주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배 옴부즈맨 두분의 노력으로 시민들의 생활속에 고충 민원과 생활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로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옴부즈맨 제도가 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기까지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 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항상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며 활동하여 온 지난 1년 동안의 노력들을 「2025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해 처리한 크고 작은 민원들의 사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선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이 옴부즈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이통장회의와 각 단체 회의시 순회 홍보와 SNS 홍보활동 등을 전개하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민원 해결을 위한 대안을 찾는 등 초심을 잊지 않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생활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한 옴부즈맨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 2.

상주시 옴부즈맨 주 선 동

목 차

| | |
|---|----|
| ▣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 |
| I. 옴부즈맨 운영현황 | 3 |
| 1. 제도도입 배경 / 3 | |
| 2. 설치 및 운영근거 / 4 | |
| 3. 추진 경과 / 4 | |
| 4. 옴부즈맨 운영방법 / 5 | |
| 5. 구성 현황 / 5 | |
| 6. 주요 기능 및 직무 / 6 | |
| II. 옴부즈맨 운영성과 | 9 |
| 1. 개 요 / 9 | |
| 2. 고충민원 처리유형 / 9 | |
| 3.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 및 유형별 처리 현황 / 10 | |
|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세부내역 / 12 | |
| 5. 고충민원 처리사례 / 15 | |
| ▣ 옴부즈맨 활동 및 홍보 | |
| 1. 옴부즈맨 활동 | 53 |
| 2. 옴부즈맨제도 홍보 | 59 |
| ▣ 부 록 | |
| 1.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5 |
| 2.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82 |
|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 86 |
| 4.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규정 | 91 |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 현황

- 도입배경 및 추진경과
- 주요기능 및 직무

II. 옴부즈맨 운영 성과

-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 고충민원 처리사례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I 옴부즈맨 운영현황

1. 옴부즈맨제도 도입배경

옴부즈맨(Ombudsman)은

- 스웨덴어로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대리인이라는 뜻이며,
- 시민의 대리인으로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 지방자치시대의 신뢰받는 행정구현 일환

- 옴부즈맨(ombudsman)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미국에서는 「민정관(民情官)·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임
- 옴부즈맨 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로써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 우리나라에서도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가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안내 등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상주시는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의 강화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자, 상주시의회 의원 발의로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5. 10. 2)하여 상주시 옴부즈맨을 위촉(2016. 7. 11)하고, 2016. 8. 1부터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을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중앙정부의 설치 권장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고충민원을 해소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맨)의 설치·운영을 권장

2. 설치 및 운영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3. 추진 경과

- 2015. 10. 27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공포(의원입법)
- 2016. 2. 29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공포
- 2016. 7. 11 제1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강석도)
- 2016. 8. 1 상주시 옴부즈맨 현판식 (상주시청 1층, 민원토지과 입구)
- 2018. 1. 1 옴부즈맨 지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사호동)
- 2018. 7. 10 제2대 상주시 옴부즈맨 재위촉(강석도)
- 2019. 1. 2 상주시 옴부즈맨 사무실 이전(시청 본관 1층 → 3층)
- 2020. 2. 27 제8회 국민권익의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강석도)
- 2020. 9. 18 제3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이범용)
- 2022. 2. 27 제10회 국민권익의날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사호동)
- 2023. 3. 10 제4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이범용)
- 2023. 9. 25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2023. 9. 25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2025. 3. 13 제5대 상주시 옴부즈맨 위촉(주선동)
- 2025. 3. 17 옴부즈맨 지원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윤창영)

4. 옴부즈맨 운영방법

가. 고충민원 신청·접수

- 본인이나 대리인을 통해 고충 민원은 서면으로 신청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 가능
-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신청의 취지와 이유, 고충 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등을 기재

나. 조사 여부 결정

- 접수된 고충 민원은 각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하 처리하고,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사항은 이첩(단순 민원도 관련 부서로 이첩처리)

다. 조사 실시

-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

라. 조사결과 통보

- 고충 민원 처리는 합의나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조사 결과를 관계인에게 통지

5. 구성 현황

가. 구성 및 지위

- 지 위 : 상주시 소속으로 직무수행관련 독립성 보장
- 임 기 :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위촉방식 : 공개 모집 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 위 촉 일 : 2025. 3. 13
- 상주시 옴부즈맨

| 옴부즈맨 | 주요경력 | 위촉기간 |
|-------|------------------------------------|-----------------------------|
| 주 선 동 | • 前) 상주시 행정복지국장 • 前) 상주시 건설도시국장 | 2025. 3. 13~ 2027. 3. 12 |

나. 자격 요건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주요 기능 및 직무

가. 직무 관할 범위

- 시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나. 직무 및 권한

-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다. 주요기능

- 행정통제 기능
 - 행정처분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 이를 조사하여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행정을 감시하고 통제

○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기능**

- 법적·행정적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고 객관적인 갈등해결을 위한 수단
- 비용의 부담 없이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조사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외된 계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로서의 기능

○ **행정개혁 기능**

- 행정의 속성상 한번 결정되면 그 결정 내용을 선례로 삼아 이를 계속하려는 위법·부당한 행정관행을 개선하도록 자극
- 특별한 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옴부즈맨 특성인 소통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의 변화 도모

○ **민주적·정치적 대변(代辦) 기능**

- 계층·부문·지역·집단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사회적 약자의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기능 수행

라. 주요권한

○ **고충민원의 조사(조례 제15조)**

- 고충민원을 조사할 때 직무와 관련하여 상주시 및 수임·수탁기관에 설명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또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 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조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정의 의뢰도 할 수 있음
-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 “단체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맨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함

○ **시정의 권고 및 의견표명(조례 제18조)**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 표명(조례 제19조)

- 고충민원을 조사·처리과정에서 조례 및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 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조례 제25조)

- 옴부즈맨의 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항에 대해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조례 제26조)

-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함

마. 처리 제외 대상

- 시의회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 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II **옴부즈맨 운영성과**

1. 개 요

가. 관련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운영시간

- 주 5회 운영(월~ 금요일) 10:00 ~ 16:00

※ 년도별 고충민원 처리 현황

- | | | |
|--------------|--------------|--------------|
| • 2025년(38건) | • 2024년(52건) | • 2023년(51건) |
| • 2022년(43건) | • 2021년(66건) | • 2020년(72건) |
| • 2019년(65건) | • 2018년(62건) | • 2017년(51건) |
| • 2016년(38건) | | |

다. 운영장소 : 옴부즈맨 사무실(상주시청 본관 3층)

라. 지원인력 : 1명

2. 고충민원 처리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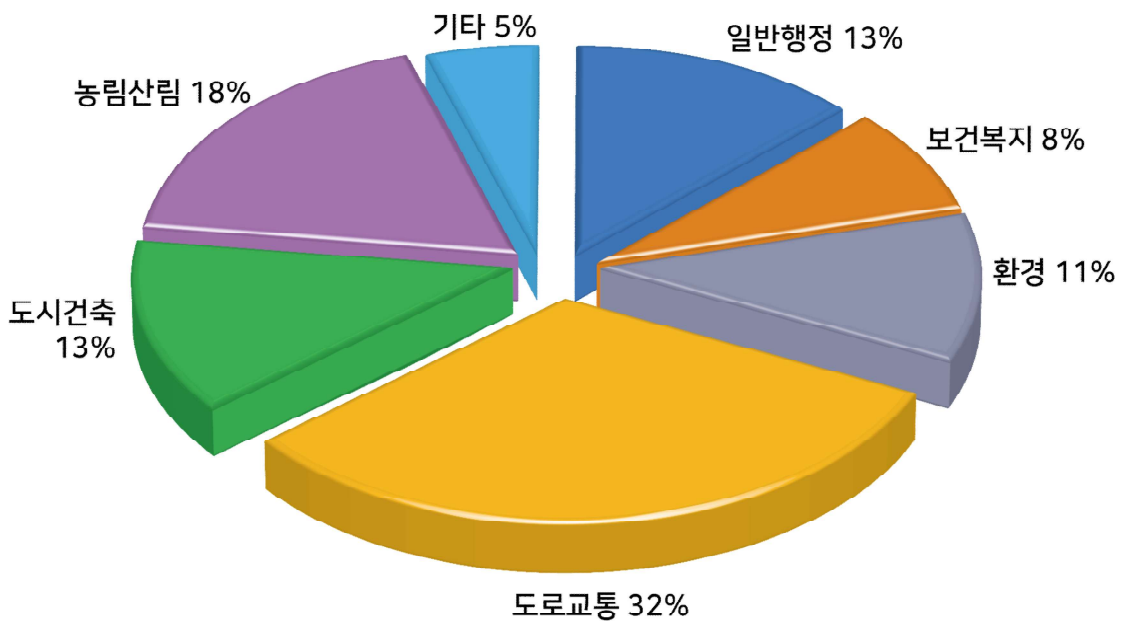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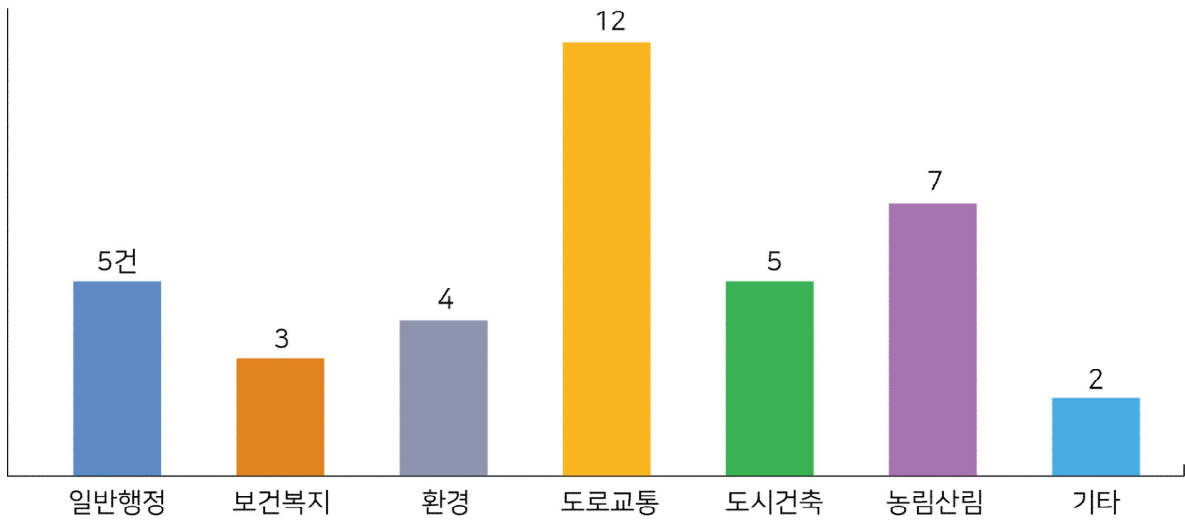
- 시정권고 :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이에 개선에 필요한 적절한 시정이 필요한 경우
- 의견표명 : 피신청인의 위법·부당하지는 않으나,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도개선 : 법령 또는 그 밖의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조정합의 :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고충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해결점을 찾을 필요가 있을 때
- 심의안내 : 다른 절차 및 제도 등에 대하여 안내하는 경우
- 기각·취하 :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거나 민원을 취하하는 경우

3. 고충민원 분야별 접수 및 유형별 처리 현황

분야별 접수 현황

| 계 | 일반 행정 | 세무 | 보건 복지 | 환경 | 도로 교통 | 도시 건축 | 문화 관광 | 농림 산림 | 기타 |
|----|-------|----|-------|----|-------|-------|-------|-------|----|
| 38 | 5 | | 3 | 4 | 12 | 5 | | 7 | 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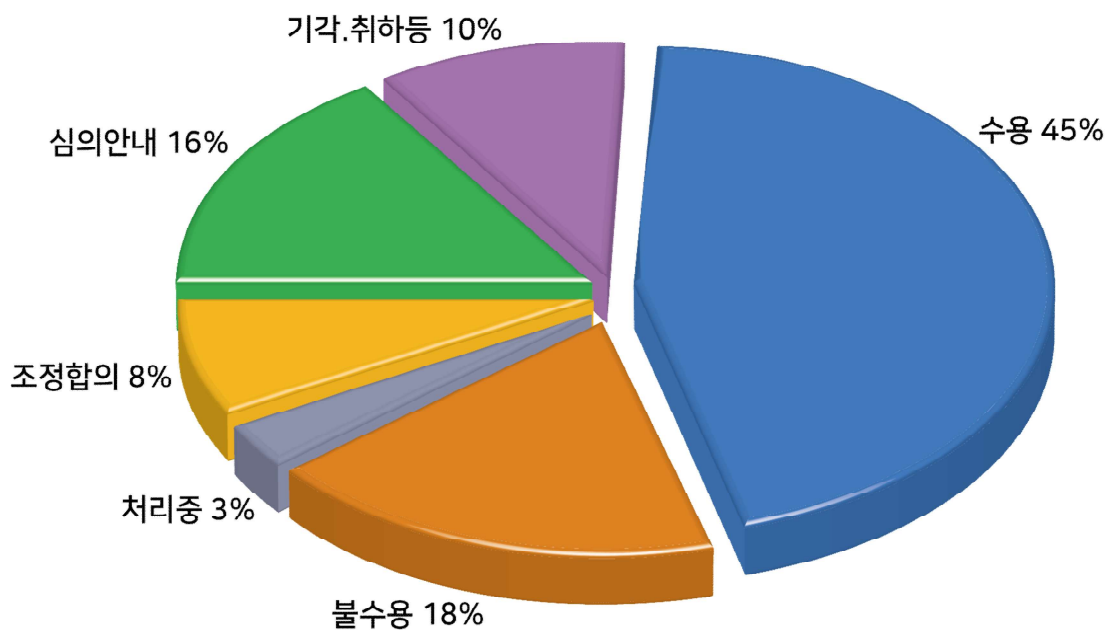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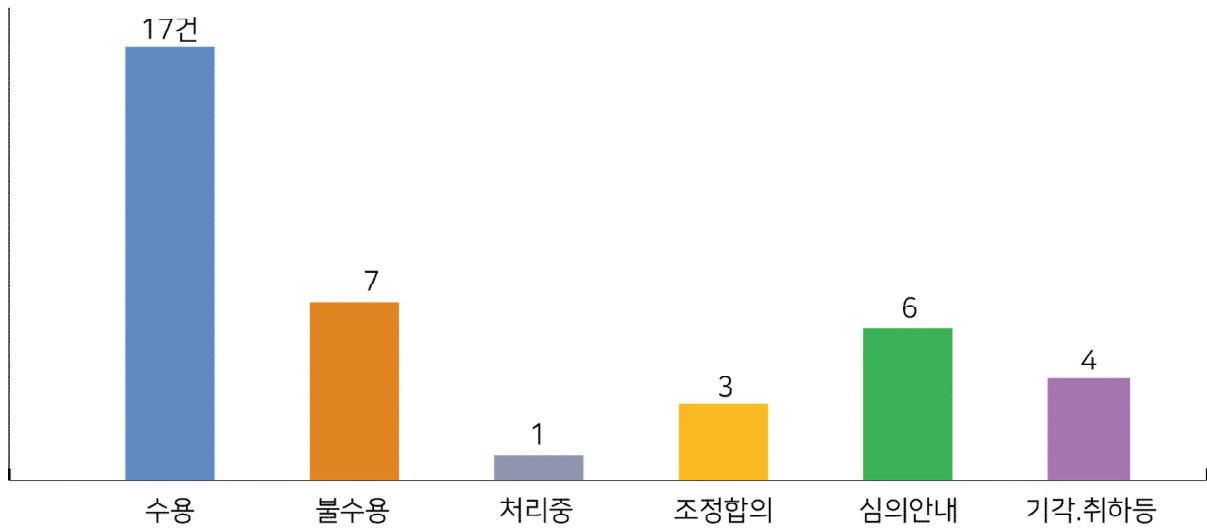
분야별 접수 현황



■ 유형별 처리 현황

| 접수 건수 | 유형별 처리 현황 | | | | | | |
|----------|-------------|--------------|-----|-----|----------|----------|-----------|
| |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 | | | 조정 합의 | 심의 안내 | 기각 취하등 |
| | 계 | 수용 (일부수용) | 불수용 | 처리중 | | | |
| 38 | 26 | 17 | 7 | 1 | 3 | 6 | 4 |

유형별 처리 현황



4.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 세부내역

■ 고충민원 접수 · 처리 세부내역

| 연번 | 민원 내용 | 처리유형 | 비고 |
|----|----------------------------------|------|------|
| 1 | 영업 중인 이용업을 새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요청 | 심의안내 | 일반행정 |
| 2 | 상주시 발주공사장의 임금 체불 해결 요청 | 수용 | 기타 |
| 3 |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과 관련한 토지 보상 요청 | 불수용 | 도로교통 |
| 4 | 맹지가 되어버린 농지의 출입로 개설 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5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요청 | 조정합의 | 일반행정 |
| 6 | 농업용수 관정 시설의 고장으로 인한 생활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농림산림 |
| 7 |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비포장 농로의 차량 통행 불편 해소 | 수용 | 도로교통 |
| 8 | 도시계획도로로 미연결 구간 추가공사 요구 | 취하 | 도로교통 |
| 9 |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 수리 요구 | 불수용 | 도시건축 |
| 10 | 산림경영 관리사 재신청으로 인한 불편 해소요청 | 일부수용 | 농림산림 |
| 1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불가로 인한 계사 운영문제 해결 요구 | 기각 | 농림산림 |
| 12 | 가족 자연장지 신고 수리 재검토 요구 | 불수용 | 보건복지 |
| 13 | 도로 개설 후 맹지가 된 주택의 통행로 확보 요구 | 일부수용 | 도로교통 |
| 14 | 본인 소유 토지에 방치된 폐가의 빈집 정비 요구 | 기각 | 도시건축 |
| 15 | 구거 부지의 농로를 막고 있는 통행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16 | 폐기물 업체의 과다 폐기물 방치 등 환경피해 해결요청 | 수용 | 환경 |
| 17 | 담장 옆 간이시설 설치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해결요청 | 조정합의 | 환경 |
| 18 |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 버스 승강장 설치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연번 | 민원내용 | 처리유형 | 비고 |
|----|-----------------------------------|------|------|
| 19 | 경지정리 지구 내 중단된 배수로 공사 조속 시행 요청 | 수용 | 농림산림 |
| 20 | 건축물 준공 후 누락된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여부 검토요청 | 불수용 | 도시건축 |
| 21 | 굴다리의 침수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22 |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토사유출로 통행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23 | 지적 불부합지가 많은 마을 지적 재조사 요청 | 불수용 | 기타 |
| 24 | 자전거대여소의 주차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도로교통 |
| 25 | 농지 내 농가주택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민원 해소요청 | 불수용 | 농림산림 |
| 26 | 일상 돌봄 수행기관 등록 관련 서류 검토요청 | 심의안내 | 보건복지 |
| 27 | 작은 도서관 활성화 방안 | 심의안내 | 일반행정 |
| 28 | 대지 경계석 부실 공사 재시공 요구 | 취하 | 도로교통 |
| 29 | 종교수련시설 상수도 설치요청 | 불수용 | 도시건축 |
| 30 | 거주지 퇴거 요구에 따른 주거지 확보 어려움 호소 | 수용 | 보건복지 |
| 31 | 오수관로 맨홀 역류에 따른 생활 불편 해소요청 | 수용 | 환경 |
| 32 | 불법 농막 증축 적발에 따른 해결 방안 검토요청 | 심의안내 | 농림산림 |
| 33 |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지번과 달라 해결 방안 요청 | 심의안내 | 도시건축 |
| 34 | 구거 폭이 줄어든 용배수로 공사의 재시공 요구 | 조정합의 | 농림산림 |
| 35 | 지적도상 국유도로와 실제 사용되는 사유 도로의 교환 검토요청 | 심의안내 | 도로교통 |
| 36 | 지적 재조사시 줄어든 마을회 부지의 원인 규명 요청 | 수용 | 일반행정 |
| 37 | 주택 인근의 축사 및 퇴비장 악취 문제 해결 요청 | 수용 | 환경 |
| 38 | 체납 상수도 요금고지서 명의변경 원인 규명 요청 | 처리중 | 일반행정 |

■ 기각·취하 등 고충민원

| 연번 | 민원 내용 | 처리유형 | 비고 |
|----|------------------------------------|------|------|
| 8 | 도시계획도로 미연결 구간 추가 공사 요구 | 취하 | 도로교통 |
| 11 |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불가로 인한 계사 운영 문제 해결 요구 | 기각 | 농림산림 |
| 14 | 본인 소유 토지에 방치된 폐가의 빈집 정비 요구 | 기각 | 도시건축 |
| 28 | 대지 경계석 부실 공사 재시공 요구 | 취하 | 도로교통 |

■ 2024년도 이월민원 처리결과

| 연번 | 민원 내용 | 처리유형 | 비고 |
|---------|-----------------------------|------|----|
| 2024-56 | 소나무류 소각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취소 요구 | 수용 | 세무 |
| 2024-57 | 인접한 축사의 방역으로 인한 약품 피해 구제 요청 | 조정합의 | 환경 |

5. 고충민원 처리사례

1

영업중인 이용업을 새 주소지에서도 할 수 있도록 요청

민원 요지

- 상주○○○병원 확장계획 부지 내에서 이용업을 하고 있는 민원인은 인근의 주택을 매입하여 조만간 이주할 계획으로 새로 매입한 주택의 부속건물에서 이용업을 계속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불가할 시 지금처럼 주택을 활용하여 이용업을 운영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이용업허가(신고)는 공중위생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어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영업행위가 가능한데 새로 이사할 주택의 부속건물은 판넬로 본체에 붙여 10여 평을 증축한 것으로써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무허가로 보이며, 이를 적법화하는데는 건축법상 대지경계선에서 50cm의 이격거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 이에 새로 이사하는 주택에서 이용업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거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어야 하는 만큼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법의 위배여부(불법건물여부, 건폐율, 이격거리 등)를 확인하여 기존건물의 합법화 여부와 용도변경 할 것을 상세히 안내하여 민원을 마무리하였음

민원 요지

- 상주시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2024년 5월 하도급업체의 미장공으로 근로한 후 20일분 노임(460만원)중 2분의 1을 2024년 9월에 받은 후 지금까지 나머지를 못받고 있는 바,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들은 상주시에서 시민들의 여가생활 활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2022년 3월에 발주한 ○○○○○공사장에서 2024년 5월경 하도급업체의 미장공으로 3명이 20일(일당23만원)씩 근로하였으나 개인별 근로노임 460만원중 절반만 2024년 9월에 받은 후 나머지(3명 총 690만원)를 아직까지 정산받지 못하고 임금이 체불되어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동 공사는 상주시에서 발주하고 ○○건설에서 수주하여 ○○건설업체에 하도급되어 시공한 것으로 현재는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어 준공검사 절차를 밟고 있는 중에 있어 하도급업체가 어려우면 원청 회사가 책임지고 임금체불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시 관련 부서에 공사가 준공이 되고 상주시에서 사업비 잔액 지급 시 노임 청구에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직접 지급토록 요청하여 원청업체의 사업비 잔액청구 및 지급시 그동안 임금이 체불 되어온 3명분의 690만원이 지급됨으로서 해결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상주시 ○○동 소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본인의 주택토지 일부가 포함되어 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건물(주택) 보상을 받고 철거하였으나 토지는 편입지 외의 전체 대지(상주시 ○○동 △△△-△△ (211㎡))는 매입이 어렵다고 하여 미보상 상태이며 토지 보상도 당연히 해 주는줄 알고 주택까지 철거하고 이사하였으며 대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편입 물건에 대한 협의 불가지역은 개설이 중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경우 소로 도시계획도로의 주된 편입부지는 옆집이고 본인의 토지는 극히 일부만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도로의 주된 편입부지인 옆집은 보상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사실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옆집앞까지만 나고 도로 연결이 중단된 상태로 있으며, 민원인은 도로편입부지의 극히 일부만 편입되었으나 본인의 도로 편입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건물철거는 하였으나 대지에 대한 보상이 없는 상태로 있으며, 동 사업 부서에서는 소로 도시계획도로의 주편입부지인 옆집이 보상을 거부하는 상태로 있어 극히 일부만 도로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민원인의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대지 전체를 매입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임
- 이에 관할 동에서 마을 쉼터나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현재는 대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무료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민원 요지

- 상주시 ○○동 △△△번지(답, 1,758㎡)의 민원인 토지로 예전부터 형성된 출입로를 사용하던 중 출입로인 토지가 사유지라며 소유자가 이용 못하게 함에 따라 민원인의 토지는 맹지가 되어버린 상황으로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농지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로를 만들어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이 사용하던 예전의 출입로는 주변 토지소유주들과의 경계마찰로 인하여 이용을 못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영농에 차질을 빚고 있음
- 이에 담당부서에 민원인 농지 하단의 구거부지를 이용하여 구거사용허가를 통해 구거의 배수로를 지나는 출입로를 설치하는 방법과 농로에서 농지로 바로 출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농지 경계측량 후 출입로 설치 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출입로를 확보하고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상주시 ○○동에서 가구점을 경영하고 있는 민원인은 전통시장과 도로를 사이에 둔 상점가임에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할 수 있는 가맹점 등록이 불가하여 이에 시민들이 외지에 가서 가구를 구입하는 불편과 불합리성 발생에 대한 의문으로 이의제기하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신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이나 상인 조직에서 가능하며 상주시에는 상주풍물시장을 비롯하여 6개의 시장으로 가맹점이 형성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가맹점 신청 방법은 기존 상인 조직과 협의하여 구역을 확대하여 가입하거나 도로변 상점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인 조직을 구성하여 등록·신청하는 방법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상주시 ○○○○과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도록 협의조정함

민원 요지

- 상주시 ○○면의 외곽지의 지대가 높은 곳에 민원인이 거주하고 있어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면 ○○리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간이 상수도 시설을 이용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여 왔으나 저수지 옆에 있는 관정 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화장실 등 생활용수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초래되고 있어 조속히 관정 시설의 정비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은 지대가 높은 곳에 주택이 있어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지 못하였으며 식수는 생수로 사용하고 화장실 등 생활용수는 마을에 있는 간이상수도 시설로 사용되던 농업 용수시설을 사용하였으나 지난 2월 말경에 마을 아래 저수지에서 농업용수를 배수지로 펌핑하는 ○○지 옆 관정 시설의 고장으로 인하여 생활용수를 사용하지 못하여 화장실 사용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마을주민들 역시 농업용수 공급이 되지 않아 영농 활동에도 지장이 초래되고 있음
- 관할 ○○면에서도 민원이 된 관정 시설의 고장 상황을 인지하고 관정 시설을 1차 정비하였으나 수리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하며, 시 본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정비업자를 재선정하고 고장난 관정 시설을 정비하여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

[현장사진]



[수리된 관정시설]



민원 요지

- ○○○○○학원 뒤쪽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상주시○○동 △△번지, △△번지의 농지로 연결되는 비포장 농로와의 연결로가 정비하지 않아 신설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사용하던 농로의 높이 차이가 생겨 영농 활동을 위한 차량 통행이 곤란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차량 통행이 가능하도록 농로 연결로 정비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 ○○동 산기슭에 있는 민원인 농지는 농로가 없는 사실상의 맹지로 타인 농지의 사용 동의를 받아 비포장 농로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2024년 도시계획도로 소로개설 시 통행로 입구 쪽의 배수로 설치 및 통로의 높낮이를 정비하지 않아 영농 활동을 위한 농업용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고있는 실정임
- 관할 동인 ○○동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동에서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후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 입구의 토지 소유자도 농로 정비에 동의하고 있어 ○○동에서 인근지역의 2025년 주민숙원사업 시행 시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흙관 설치 및 농로 포장을 실시함으로써 영농 활동을 위한 차량 통행의 농로 정비 민원을 해결

[공사전]



[공사후]



민원 요지

- 2023년~2024년기간중 상주시에서 발주한 ○○○○○공사 및 ○○○○공사 등으로 인한 대형 차량과 장비의 진출입 및 공사 진동 등으로 상주시 ○○읍에 소재하는 ○○암 건물 및 담장과 기와지붕 등에 균열 및 누수가 발생되어 피해를 입고 있어 건물 안전진단과 함께 피해에 대한 수리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 ○○읍에 위치한 ○○암 건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사용 승인이 31년이 경과되고 있으며 철근 콘트리트 구조로 건축되어 있는 상태로 민원인은 상주시에서 발주한 다수의 공사들로 대형 차량 및 장비의 진출입과 공사 진동 등으로 인하여 대문 위쪽 기와 이탈로 인한 누수, 1층 건물 안쪽의 균열과 누수, 2층 법당의 경미한 균열, 1층 별관 산신당 균열 및 누수 등이 발생되었다고 하며, ○○과 담당 팀에서도 기 제기된 민원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임
- 현지 확인 및 담당 부서와의 협의 결과 ○○암 건물의 다수 균열과 누수는 확인 되었으나, 균열 등의 상태가 심하지 않고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 공사의 진동 등으로 인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건물 피해 수리가 곤란하다는 의견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통하여 건물 피해 원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음



민원 요지

- 15년전 귀농한 민원인은 상주시○○동 산 △△번지에 산림경영 관리사를 설치·사용 중으로, 변경 신고를 통한 재사용 기한이 곧 만료함에 따라 재차 변경 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담당 부서로부터 재사용 기간 연장이 만료된 후에는 다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며 현장의 변경 내용이 없는 상태임에도 처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신청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과 고령으로 인한 절차 이행 어려움 등으로 신청의 불편 해소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은 2019년도에 상주시○○동 산 △△번지 상에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림경영 관리사를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통해 3년간 사용하였고 2022년에 변경신고를 통하여 3년간 재사용하였으며 종전과 변경 내용이 없는 상태임에도 비용을 부담해서 측량 등을 실시하고 재사용 기간 만료가 되는 2025. 4. 28.까지 신규로 산지일시 사용신고를 해야 하므로 금전적 부담 및 절차 이행 어려움 등의 고충을 겪고 있음
- 관련 부서와 협의한 결과 최초 신고 내용과 변경 사항이 없으므로 종전 측량업체와 상의하여 추가적인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실측도를 활용한 도면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민원을 해결

[산림경영관리사 현황]



[현장사진]



민원 요지

- 1996년도부터 상주시○○면 ○○리 △△△번지 일원에서 양계장 2동 750평을 운영하였으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에 따른 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신청하지 못하고 이후 2020년에 양성화를 시도하였으나 신고 불가 처리되었으며 2024년 8월경부터 무허가 운영의 사유로 (주)○○에서 병아리 공급이 중단되면서 양계장 운영이 중단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계장 운영을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 가능 여부와 관련된 명확한 답변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의 부친은 ○○과에 가축사육업 신고 및 등록을 하고 1996년부터 상주시 ○○면 ○○리에서 양계장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5년 3월 25일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기존 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 시기를 놓쳐 무허가인 상태로 민원인에게 상속되었고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상주시 가축제한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하천구역 경계선 및 주거밀집 지역까지 각각 1km이내까지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적용을 받는데 해당 양계장은 지방 2급 하천인 ○천까지의 거리가 불과 60m 정도이고 주거 밀집지까지는 각각 600m와 150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 수리가 불가한 상태임
- 양성화 시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를 수리지 못하여 양계장 운영을 하지 못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사정이나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신고수리가 불가하여 법령과 조례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기각 처리하고 버섯재배사 등 다른 대안으로 축사 시설을 사용토록 안내



12 가족자연장지 신고 수리 재검토 요구

민원 요지

- 상주시○○동 ○○○사 암자뒤 ○○동 △△△번지(전)에 2024년 11월경에 사전 안내도 없이 가족 자연장지가 신고 수리되었으며 2025년 3월부터 장비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작할 때 이를 인지한 ○○○사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으나 강행하고 있어 사찰과 신도회 측에서는 자연장지 조성 이후 사찰 이미지 훼손과 함께 시각적인 측면을 우려하여 가족 자연장지 신고 수리 재검토와 함께 조성 자체를 중단하기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문제가 된 가족자연 장지 건물은 상주시○○동 자연부락 맨 위쪽에 있는 ○○○사 암자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 신고 수리되었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서 나무 정리 등 주변 정지작업을 하는 중에도 ○○○사측에 전혀 얘기가 없었던 상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100㎡ 미만은 신고 사항으로 설치 기준으로는 지형, 배수, 토양을 고려하여 붕괴 침수가 없는 곳에 조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한 제한의 규정이 없으므로 법률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법률적으로 신고 수리 재검토는 곤란하나 담당 부서에 사찰 측의 요구사항인 위치 변경 및 수목 차폐시설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고자 측과 협의 조정토록 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3년 전 상주시○○동 제방 아래 주택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으나 지적도상 있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비포장 제방길로 출입하고 있어 주택통행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된 사유지 불하 또는 임대 등을 통한 통행로 확보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 ○○동 △△△-△번지 주택은 지적도상 약 2m 정도의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나 사실상 사용된 적은 없고 주택 통행로는 비포장 제방길을 사용하였다고 하며, 당시 ○○과에서 시행한 국토부의 공모 사업인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도시계획 도로공사(소로)로 인하여 제방과 접한 신설도로의 경사진 부분과 연결되는 해당 지번의 주택 진입로와의 높이 차이가 심할 뿐 아니라 안전 펜스로 막히게 된 것이며 경사진 비포장 제방길로 통행하여 불편했던 것으로 보이며 도로로 연결되는 사유지는 ○○과 행정재산으로 일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불하나 임대는 어려운 상태이고, 제방 토사가 주택 뒤쪽으로 흘러내려 주택의 안전에 우려가 되고 있음.
- 상주시 ○○과와 ○○동 연석회의 결과 행정재산인 사유지의 사용을 통한 통행로 확보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후 ○○동에서 기존 제방을 통한 주택 진입로 정비 및 토사 붕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을 마무리.

[전]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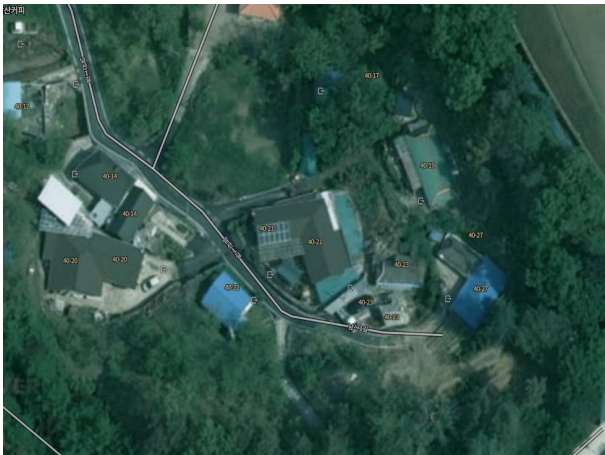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상주시○○동 ○○○-○ 번지 민원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이 불가능한 폐가 2채가 방치되고 있고 ○○공원의 진입로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우범지대화되어 있고 민원인의 토지 사용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빈집 정비사업으로 폐가의 빈집 정비와 건축물 관리대장말소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확인 결과 상주시○○동 ○○○-○번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토지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2조 1호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5호 농촌에 해당되는 지역(도시지역의 녹지지역 중 생산, 보전녹지지역)에 포함되지 못하여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정비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 처리하고,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빈집 정비 대상이 아니나 민원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공원의 진입로에 위치한 폐가의 정비는 공원의 미관과 함께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빈집 정비를 위해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는 있으나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 절차 등에 대하여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

[위치]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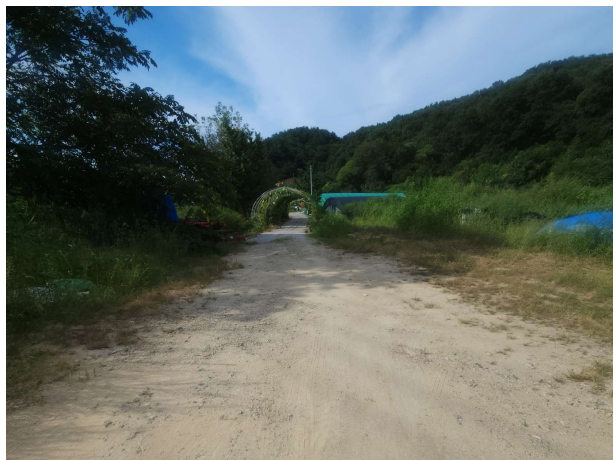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집안 소유의 상주시○○동 △△△번지에서 감나무를 경작하고 있는 민원인이 구거인 상주시 ○○동 △△△번지 일원의 통행로로 사용하던 농로에 인근 꽃재배 농가에서 농로 입구 및 끝부분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여 영농을 위한 화물차량 통행이 사실상 어려울 뿐 아니라 통행 시 본인의 승낙을 받으라고 하는 등 사실상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통행 불편 해소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농로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오던 국가 소유의 지적도상 구거인 상주시○○동 △△번지에 인근 농지를 임차하여 꽃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농로 진출입로에 골재 등을 적치하고, 임의로 장미 넝쿨 식재 및 영농 폐자재 방치 등의 행위로 차량 통행을 막고 있어, 기존 농로의 확보뿐만 아니라 국유재산법 제74조(불법 시설물의 철거)에 의거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불법 점유 및 무단 방치하고 있는 골재 등의 철거와 원상 복구가 필요한 실정임.
- ○○과 담당팀에 구거의 원상 복구를 통하여 농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구거의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관련 농가에 통보하여 무단 점유하고 있는 각종 자재를 원상 복구하고 통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의 영농을 위한 통행 불편 민원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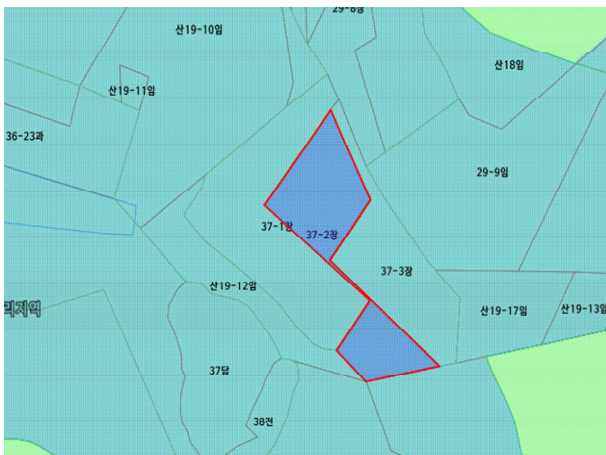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상주시 ○○면 ○○리 소재의 폐기물 업체의 과다한 폐기물 방치 및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어 합법적인 단속을 통하여 폐기물 업체가 적법하고 안전하게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폐기물 종합처리업체인 상주시 ○○면 ○○리 ○○-○번지 소재 ○○○○개발이 허가받은 물량보다 과다한 폐토사 및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상주시에 이미 조치명령을 시행하여 처리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며, 담당 부서에서 과다 폐기 물량 측정을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요청하여 방치 폐기 물량을 측정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이미 금년 초 여러 위반 건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조치명령 불이행 시 가중적인 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임
- 동 업체에서 이미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인하여 폐기물이 소각되는 등의 사례도 있는 등의 우려도 있어 이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피해가 우려되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요청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며 조치명령 불이행 시 적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임을 민원인에게 설명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상주시 ○○동 △-△번지 민원인의 주택 옆집(○○동△ -△번지)에서 사전 고지없이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과 페인트 등이 화단 등 주택 안팎으로 떨어져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되고 있고 리모델링 건물과 담장 사이에 높은 간이시설 설치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민원인이 심한 압박감까지 느끼고 있는 등 공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어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의 옆집인 상주시 ○○동 △-△번지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가 지난 5월 초순부터 대대적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철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과 폐기물 방치 및 페인트, 스티로폼 조각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이 주택가에서 발생되고 있었으며 특히 공사에 대한 고지도 없이 리모델링이 진행되면서 가장 가까운 옆집에 살고 있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의 민원인과 갈등이 발생되어 피해를 겪고 있음
- 담당부서인 ○○○○팀과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주택 리모델링 시공 현장 감독에게 소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하고 민원인의 마당 및 주변 청소, 담장 옆 간이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요구하여 조정·합의하였고 동 지역 환경감시원이 환경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파크골프 동호회원인 80대 고령의 민원인은 상주시 ○○동 ○○천에 위치한 파크골프장 사용을 위하여 매일 택시를 타고 다니는 등 불편이 있을 뿐 아니라 비용 부담도 크고,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파크골프 회원의 시내버스 활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과 가까운 화개삼거리 인공폭포 주변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버스 승강장 설치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천 파크골프장은 최근 동호회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파크골프장 제방 주변의 주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며 고령의 회원들도 증가하고 있으나 가까운 버스 승강장이 400m 정도 떨어져 있어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또한 상주시에서 7월부터 “시내버스 전면 무료 승차 지원사업”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고령회원의 교통편의 증진과 시내버스 무료 승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동 삼거리 인공폭포 주변에 버스 승강장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담당 부서인 ○○○○○과에 파크골프 동호회원과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하여 버스 승강장 설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버스 승강장 설치 위치에 대한 현장 확인 후 관할 동인 ○○동에 버스 승강장 표시판 설치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동에서는 버스 승강장의 표시판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민원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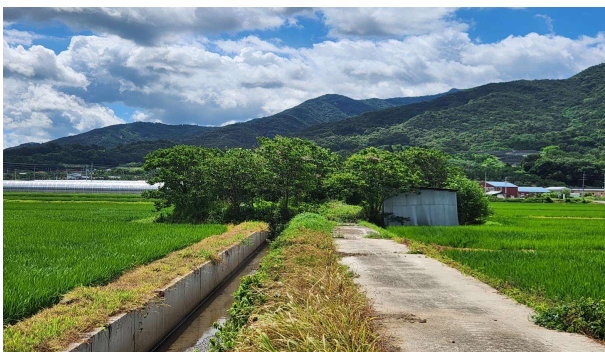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상주시 ○○동에 소재한 경지정리 지구 내에 콘크리트 U관 배수로 설치공사 당시 일부 토지 소유자의 보상 거부로 인하여 중간까지만 콘크리트 U관이 설치되고 공사가 중단되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발생되면 농수로에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하여 주변 농지가 침수가 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어 조속히 중단된 U관 배수로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에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2021년경에 ○○동 경지정리지구 내에 콘크리트 U관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하였으나 배수로 중간에 있는 감나무밭 소유주의 보상 거부로 인해 전체 500m 공사 구간 중 절반 정도인 약 260m 정도만 U관 배수로를 설치하고 잔여 구간은 그대로 토사 농수로로 방치된 상태여서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당시 마을 통장이 개인 사비를 들여 보상을 거부하던 감나무밭 부지를 매입하고 U관 배수로 설치를 위한 분할 측량까지 대신하였으며, 이후 상주시에서 부지 보상은 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U관 배수로 추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어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되고 있음
- 담당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 경지정리지구 내에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을 조속히 U관 배수로 추가 설치 공사 (B:1,500mm, H:1,200mm, L:240m)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3회 추정 시 추가 배수로공사 예산 9,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농사가 마무리되고 장비가 운영될 수 있는 12~1월에 공사를 시행토록 함으로써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30여년 전에 준공되어 운영되고 있는 ○○○○연습장을 민원인이 매입하고 임대·운영하던 중 연습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추가시설을 설치하고자 건축 관련 부서 등을 방문 하였으나 시설물건축 당시 임야 및 전, 과수원으로 되어 있던 토지의 지목변경과 분할측량 등이 시설물 준공 이후에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시설 부지와 잔여부지의 경계 부분이 명확하지 못하여 추가 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연습장은 ○○동 △△△-△번지 외 3필지의 농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 건축 허가를 받아 준공하였고 이후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었으며, 준공 후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를 누락하고 수십 년이 지났으며, 문서 보존 기간이 지난 사유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제외한 관련 서류와 도면 등을 찾지 못하였으며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관련 자료도 확인할 수 없었음.
- 건축법 제11조에 의하면 건축 허가를 받으면 농지전용과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관련 인허가 등의 의지)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한 경우 농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이 있으나 적용 시기 등에 논란의 여부가 있으며, 특히 허가받은 시설물의 위치와 함께 농지전용과 산지전용 협의 면적과 같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따라서 건축물 허가 당시 신고된 대지 면적의 경계 부분에 대한 도면 등 관련 서류가 없고 시설물 설치 당시 적정 설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없어 토지분할과 지목변경 신청 등이 곤란한 상황으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과 현재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하여 안내하고 마무리

민원 요지

- 상주시 ○○면에 위치한 국도○○호선 ○○교 옆 굴다리는 주변 농지보다 지대가 낮아 배수펌프를 운영되고 있으나 지난 호우로 잡초와 흙탕물이 흘러내려 배수펌프의 배수구가 막혀 해당 굴다리가 침수되어 영농을 위한 통행이 곤란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농어촌공사를 방문 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어 책임 소재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굴다리 통행을 위한 통행 불편 해소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면 ○○리 경지정리 지구는 낙동강에 인접하여 있으면서 지대가 낮아 상습 침수 지역이었으나 침수 예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의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와 농어촌공사가 4대강 정비사업 당시에 발생된 모래로 농지를 3m 정도 높이는 사업을 실시한 후 농지와 비슷했던 국도○○호선의 굴다리 바닥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비가 많이 오면 주변 농지의 잡초 및 진흙이 흘러내려 설치된 배수펌프의 배수구를 막아 굴다리가 침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굴다리 자체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대구국토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굴다리 침수에 대비한 배수펌프 시설은 경지정리 지구 농지개량을 담당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및 운영하고 있음
- 민원 제기 이후 농어촌공사에서 배수구의 오물 제거 및 주변 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굴다리 통행 불편 민원이 해결되었으며 잡초와 흙탕물이 흘러내리는 장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관할 ○○면에 굴다리 주변 농지의 사면 정비를 요청하여 주민 숙원사업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민원을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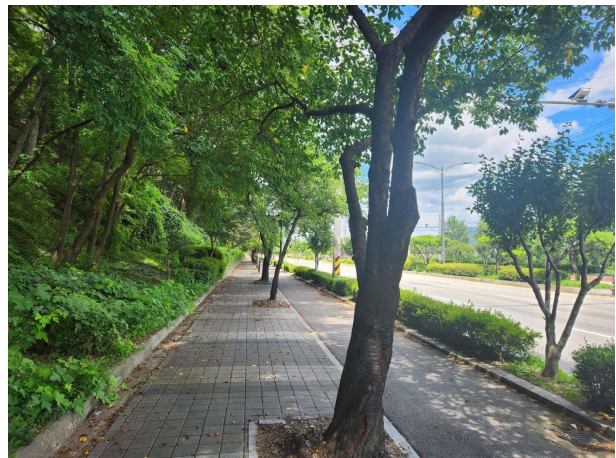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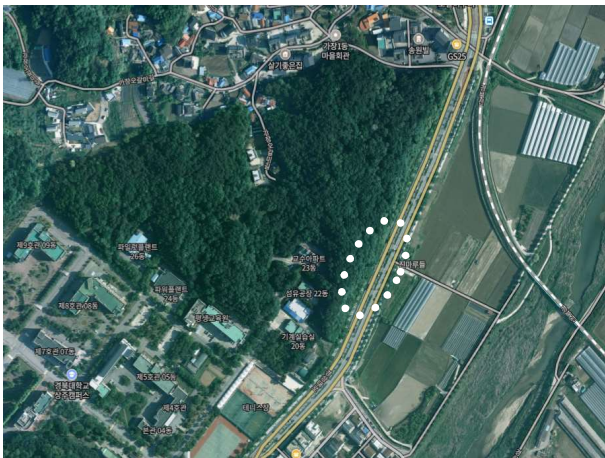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상주시○○동 ○○○마을과 경북대학교 상주캠퍼스 사이의 국도 ○호선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호우로 인하여 인도 옆에 있는 경사진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인근 마을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토사 정비를 통한 통행 불편 해소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동 ○○○마을은 경북대학교 상주 캠퍼스 인근에 위치하여 원룸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 통행로로 마을과 경북대 상주 캠퍼스 사이의 국도 ○호선의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호우로 인하여 인도 옆의 임야에서 토사가 흘러내려 통행에 방해물이 되고 있어 주민들과 학생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임
- 현장 확인 후 통행 불편사항을 인도 및 자전거도로 관리 담당인 ○○과에 전달하였으며 ○○과에서는 현장 확인과 함께 신속히 인도 및 자전거도로에 유출된 토사를 제거함으로써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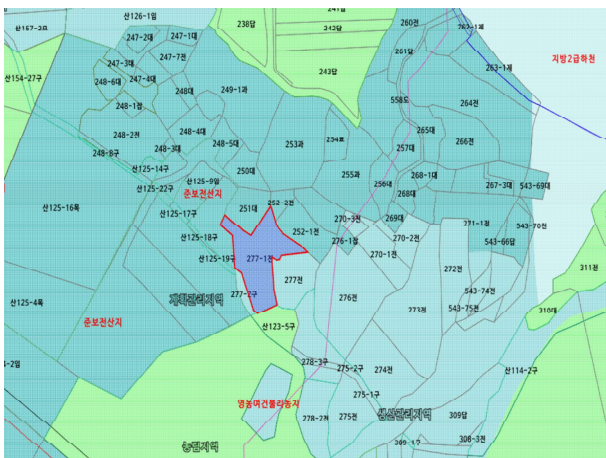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상주시○○○리 마을 통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보니 본인 소유인 줄 알았던 대지 일부가 타인 명의로 되어있거나 마을 안 길의 대부분이 현재까지도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등 지적 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지적 불부합지 문제로 마을 내 도로 확장공사 등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상주에서 마을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지적 재조사 사업지를 추가 선정하여 해결해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2011년도에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상주시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와 협의하여 지적 불일치 부분이 많은 71개 마을을 사업 시행 지구로 선정하였는데 민원인이 거주하는 ○○면에는 ○○지구와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지구는 민원인의 ○○리 주변으로 2017년에 이미 사업이 시행하여 완료되었음
- 국토교통부에서는 기존 선정된 71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203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25년 현재 전체 사업 지구의 2분의 1정도만 진행되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종료 시점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선정된 대상지구의 사업 완료 이전에는 사업 대상지 추가 선정은 곤란한 실정이므로 이를 민원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되도록 하여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역 자전거대여소에서 가끔 자전거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민원인은 자전거대여소 직원이 운행하는 화물차가 대여소 현관 앞에 수시로 주차되어 있어 방문하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자전거 대여 및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하여 화물차를 주차구역으로 이동해 주차하도록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에서는 자전거와 철도를 연계할 수 있는 ○○역 자전거대여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서 상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상주 시내나 인근 관광지를 자전거로 관광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관광사업의 일환 및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자전거대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행하는 포터 더블캡 화물차가 대여소 현관 옆 공간에 상시 주차되어 있어 자전거를 대여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이로 인한 불친절 등으로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차역 자전거대여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운행하는 화물차는 상주역 주차장으로 이동 주차토록 하였으며 근무 직원에 대한 친절 교육을 실시토록 하여 상주시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상주시 ○○면 일원에서 영농을 하던 중 본인이 경작하던 상주시○○면 ○○리 △△△번지(전)에 농가주택을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에 농지전용이 불가하다는 담당 부서의 답변으로 건립계획이 중단되어 거주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농지전용 민원의 고충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은 상주시○○면 소재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리 본인 밭에서 경작한 농작물을 사용해 왔으며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식당 건물을 매각하고 ○○리 밭에 농가주택 건립을 추진 하여 왔으나 해당 토지는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림지역이며 농업인 주택 허가가 가능하려면 「농지법」 제32조 1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세대의 농업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하여야 하나 경작한 채소 등을 영업에 사용하여 직접 수입은 없고 2024년 수입 기준으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여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농지전용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경지정리 지구의 농지보존을 위한 상주시의 심사 기준 적용으로 현재로서는 농가주택 건립이 불가한 상황으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황을 충분히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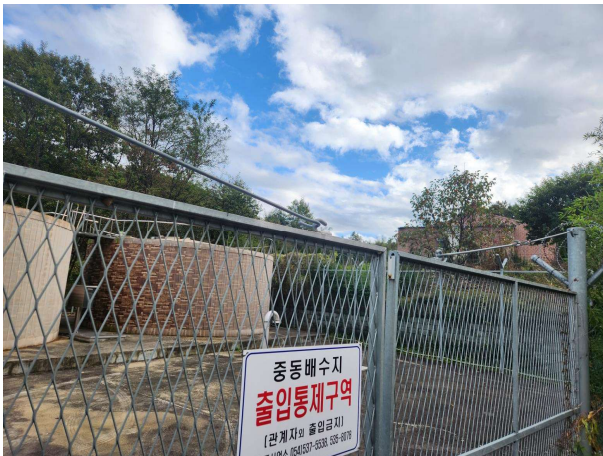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종교인으로 종교수련시설인 상주시 ○○면 ○○리에 있는 ○○수련원을 임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나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나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는 ○○배수지에서 상수도를 연결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민원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수련원은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2층 건물로 2005년 준공되었으며 식수 및 생활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정을 굴착 하였으나 실패하여 인근의 간이상수도도 사용하던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왔으며 최근 가뭄으로 인하여 그것도 중단된 상태이고 고개 정상 부근에 위치하고 약 80m 아래쪽에 ○○배수지가 있음
『수도법』 제71조, 동법시행령 제65조, 『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신규로 설치되는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의 설치하는 가능한 하다는 의견이나 관련 규정에 의거 ○○배수지에서 수련원까지 약 80m 정도로 배수지 앞 도로에서 관로를 연결하는 등의 원인자부담금 공사비 비용이 약 5,300만원 이상 예상되어 건물주의 비용 부담이 적지않은 상황임
- 상수도 설치를 위한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징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불가피하게 적용해야 하는 부분이며 건물 소유주와 민원인에게 상수도 설치하는 가능하나 비용 부담에 대한 설명과 상수도신청을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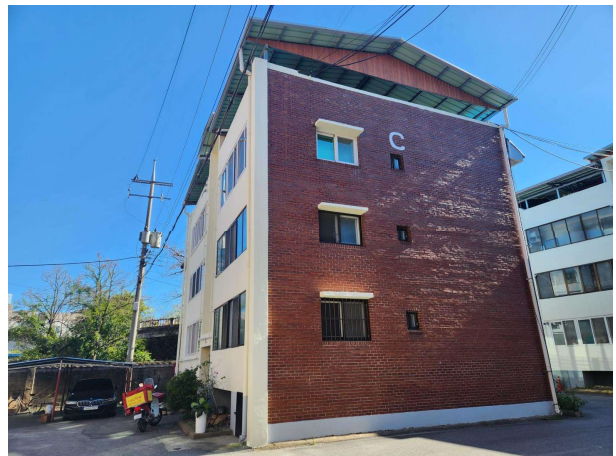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서울에서 생활하다 형편이 어려워져 남편의 고향인 상주로 내려와 남편 친척 소유인 상주시 ○○면 ○○리에 있는 농막을 수리하여 남편과 생활하였으나 2016년경 남편이 사망한 이후 남편 친척인 농막 소유주의 퇴거 요구 내용증명이 있어 재판까지 진행되었으나 법원의 재판조정으로 일부 보상비 지급과 함께 10월 말까지 퇴거토록 결정되어 사실상 갈 곳이 없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의 현 거주지는 농막 형태의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는 남편 친척 소유였으나 상속이 되어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를 대리한 대리인이 내용증명으로 퇴거를 요구하면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재판은 하였으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보상비 지급과 함께 10월 말까지 퇴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그동안 주거지 확보를 위하여 관할 ○○면 복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LH 주택 공사의 주거 사다리 사업을 신청·선정되었으나 입주 순위가 늦어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 알 수가 없어 현재로서는 주거지 확보가 막막한 상황임
- 민원인은 복지사업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어 있어 주택을 임대 할 경우 일부 임대료 지원이 가능한 상태여서 복지 담당자와 함께 민원인에게 서둘러 임대주택을 구하도록 하였으며, 민원인이 시내에 있는 ○○동 ○○빌라를 임대계약하고 이사를 하였으며 ○○동에서는 임대료를 지원받도록 조치함으로써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상주시 ○○읍 ○○리 주민으로 ○○읍에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집앞 도로 오수관로 맨홀에서 비가 많이 오면 오수가 역류하여 도로 주변과 집안 화장실까지 오염되는 피해를 입고 역류차단기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도 오수관로 맨홀은 역류하여 농작물 피해 및 환경오염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불편 해소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 ○○읍 오수처리는 ○○시와 상주시가 공동 투자하여 ○○하수처리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0월 15일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집 앞 도로의 오수관로 맨홀 2곳에서 역류하여 도로 옆 농지로 흘러 환경오염 및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여 하수도사업소에 신고하였으며 ○○시와 상주시의 담당 부서에서 2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3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집 안 화장실까지 역류하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후 역류차단기를 설치하여 집 안 화장실 역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집 앞 도로 오수관로 맨홀 2곳의 역류는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원인은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관로 중간에 수량을 조절하는 중계시설이 있는데 우수량이 많을 경우 일부 우수량을 조절하지 못하여 오수 역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집 앞에 설치된 관로가 메인 관로이고 노후 관로로 교체 대상이며 역류차단기의 설치로는 해결이 불가하고 국비 예산 확보를 통한 노후 관로 및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상태임
- ○○○사업소에 ○○읍 ○○리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수관로 맨홀 역류현상방지를 위하여 노후 오수관로 및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미 문제를 인지하고 있던 ○○○사업소에서는 메인 관로인 만큼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지원을 신청하여 개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2026년 예산을 편성하여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민원인에게 사업계획을 전달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에서 친척들이 주말농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컨테이너 농막을 설치 사용하다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농막을 증축하였는데 정부의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항공촬영으로 불법 건축이 적발되어 통보됨에 따라 해결 방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양성화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면 ○○리 △△△-△번지 토지의 불법 농막 증축 적발 건은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정부의 항공촬영으로 2023년 정부 합동 감사에서 적발되어 2025년에 우리 시 ○○○○과로 통보된 사항으로 ○○○○팀과 ○○과로 전달되어 ○○○○팀에서 2025. 7월에 읍면으로 “2023년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따른 불법 농막 등 조치” 공문을 시달하여 조치 중인 사안으로 기존 컨테이너 농막 자체는 건축법에 의한 가설건축물로 신고되어 있으나 2021년 불법 증축되어 통보된 면적은 75.7㎡ (23평)이며, 농지법상 농막의 규모는 20㎡(6평)이고 2025.1.1.일부터 3년간 시행되는 체류형 쉼터는 33㎡ (10평)이나 적발된 불법 건축물의 규모는 75.7㎡ (23평)은 농지법상 농지전용의 양성화 방법이 없는 상태임
- 민원인에게 정부의 항공촬영으로 불법 농지전용으로 적발되어 통보된 불법 건축물 75.7㎡(23평) 규모 전체는 농지전용과 건축물의 양성화는 불가능한 상태이며 현재 적발된 불법 건축물 75.7㎡(23평) 규모를 농지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2027.12.31.일까지 농지전용의 대상이 아닌 체류형 쉼터 규모인 33㎡ 으로 건축물을 축소하고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여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임을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읍 ○○길 △△△-△ 번지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건축물 대장의 지번이 이웃에 있는 ○○길 △△△-4번지로 다르게 되어있음을 알고 수차례 합창읍과 건축과를 방문하여 행정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등재 되었으니 수정을 요청 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실제 지번으로 수정할 수 있는 해결 방안 검토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은 ○○읍 ○○길 △△△-5 (○○리 167-2)에 거주하며 주소를 두고 있으나 건축물대장에는 ○○읍 ○○길 △△△-4(○○리 171-2)로 착오등재되어 있는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1항에 의하면 소유주가 건축물대장의 기재 내용 중 지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지번 정정신청서에 “토지대장, 현황 측량 성과도,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시장이 이를 확인한 후 그 지번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어 우선 지적측량업을 등록 한 자나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현황 측량을 의뢰한 후 성과도와 함께 신청서를 ○○읍에 신청하고 ○○읍에서는 ○○과로 진달 하여 지번 정정이 되도록 절차가 진행되므로, 건축물대장상 지번이 어떻게 착오가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법적으로 지번 정정은 행정의 직권정정으로는 어렵고 본인의 신청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설명과 함께 건축물대장상 착오로 기재되어 있는 지번 정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적측량 관련 업체에 현황 측량부터 의뢰하여 지번 정정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상주시 ○○면 ○○리 △△△△번지 일원의 농지는 집중 호우시 농지 침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2025년 ○○리 ○○○○정비 공사로 시행하면서 구거 폭이 좁게 시공되어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 우려로 지적도상 구거에 맞게 용배수로 정비 공사를 재시공할 것을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이 발생된 ○○면 ○○리 ○○○○ 정비 공사는 주변 지역이 집중 호우시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리 지역의 배수를 위하여 식생 콘크리트 블록 설치 공사로 길이 80m, 높이 2m로 양안 구간 중 아래쪽 한쪽 면만 설치 시공되었고 지적상 상단부 구거 폭이 8m 정도이고 구거의 폭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사유지를 침범하지 않는 국유지인 구거 내에서 공사가 불가피하여 다소 폭이 줄어들었다고 하나 주민들이 걱정하는 유수의 흐름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 지역의 침수 피해 원인은 전체적인 구거의 구조적인 문제로 공사 부분 앞에 있는 도로 박스 앞의 직각으로 꺾여진 배수로와 함께 위쪽의 배수로를 잠식하고 있는 암반 부분 그리고 공사 끝부분에 있는 갑자기 줄어든 2m 내외의 구거 폭이 실질적인 문제라는 의견으로 설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민원인과 의견 차이가 있는 상황임
- 민원 협의를 위하여 2025년 12월 18일(목) 14:00에 ○○면에서 민원인과 관할 이장, ○○과 ○○○○팀장, ○○면 관계자, 읍부즈맨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토의 결과 담당 부서에서 설계상 잘못이 없는 용배수로 공사의 재시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구거가 조금 더 넓어진다고 배수의 차이가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농경지 침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공사 현장 위쪽 배수로 내 암반 정비와 현장 맞은편 블록쌓기를 우선 시행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도로 박스의 구조개선을 위한 부분은 내년 추경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민원인과 관할 이장은 며칠 뒤에 있을 마을 회의시 상의된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협의함으로서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면 ○○리 △△△번지 본인의 주택 대지를 관통하는 지적도상 국유지 도로가 있으나 마을주민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로는 본인 소유의 대지로 되어 있는데 원인은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마을안길을 정비할 때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현재대로 마을안길 도로가 만들어져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주택 소유자는 매매 등의 소유권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상호교환이나 해결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주기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의 주택을 관통하는 도로는 상주시 ○○면 ○○리 △△△△번지(도로)로 마을내 거의 전 지역의 도로를 포함하는 지번으로 건설부 국유지로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는 본인 소유의 대지인 ○○리 △△△번지로 분할 측량없이 사용되고 있어 민원인으로서의 소유권 관리에 불편함이 예상됨
- 국유재산법 제54조 1항 4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점유 중인 일반재산과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와 동법시행령 제57조 4항 3호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란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 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로 정하고 있어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 교환이 불가하며 국유지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쳐 분할측량과 도로의 폐지를 신청하여 처리하고 도로부지가 폐지되면 일반재산으로의 전환되어 관리주체가 상주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전환되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법 제54조 1항 4호와 동법시행령 제57조 4항 3호에 의거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을 신청할 수 있음을 심의안내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상주시 ○○면 ○○리 이장인 민원인은 2017년도에 시행된 ○○리 지적 재조사시 마을회 부지인 ○○리 △△△번지의 답이 545㎡에서 506.6㎡로 38.4㎡가 줄어든 것을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하고 지적 재조사시 부지 보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원인규명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상주시 ○○면 ○○리 지적 재조사 사업은 상주시와 한국국토정보공사 상주지사가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민원 대상인 ○○리 △△△번지의 마을회 부지는 토지대장 상으로는 2017.12.28.일 지적이 확정되었으며, 이후 마을회 부지로 등기는 2018.1.9. 완료되었음. 기존 소유주는 ○○면 ○○리에 거주하시던 고인이 되신 ○○○며 기존 소유주가 지적 재조사 당시 줄어든 부지 38.4㎡(11.6평)에 대한 보상금 ○○9,920원을 정산받았으며 이후 줄어든 면적 506.6㎡인 ○○리 △△△번지를 마을회에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법원의 등기부등본상에는 등기원인은 2017.12.21.자 증여로 12.22.자로 접수가 되고 2018. 1. 9일 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토지 대장상 지적 확정일자와 등기부등본상 증여 시기, 소유권 이전 접수 시기가 차이가 있어 마을 내에 오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민원인과 현장 미팅을 통하여 ○○면 ○○리 지적 재조사 사업의 진행에 대한 설명과 궁금해하던 줄어든 면적의 보상금은 ○○9,920원이며 이에 대한 정산은 부지 증여자인 고인이 되신 전 소유주에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설명하고 토지 대장상 지적 재조사 확정일자와 등기부상 증여날짜가 차이가 나는 원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곤란한 사항으로 보이며 마을 내에 일어나는 오해와 갈등을 잘 마무리하도록 당부하고 민원을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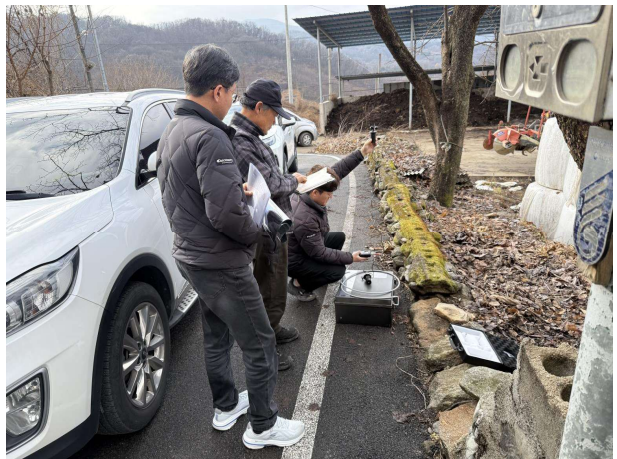


민원 요지

- 상주시 ○○면 ○○리에 거주하는 민원인은 축사와 맞닿아 있는 주택을 2016년 12월에 매입하였으나 이후 축사의 증축과 분뇨처리시설인 퇴비장의 설치로 인하여 악취가 심해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악취 문제 해결을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민원인의 주택은 상주시 ○○면 ○○리 △△△번으로 2000년 9월에 사용 허가가 되었으며 주택과 맞닿아 있는 축사는 우사 2동과 부속동으로 2008년 1월에 사용 허가되었고 2019년 10월에 우사 부속 2동 및 볏짚 보관 창고, 퇴비사를 증축하였음
- 축사를 신축한 소유주가 2011년에 주택까지 소유한 이력이 있으나 이후 축사와 주택을 각각 매도하였으며 주택은 그동안 두 차례나 소유자가 변경된 후 현재의 민원인에게 2016년 12월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19년 10월에 설치된 퇴비사의 분뇨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악취가 심해진 것으로 보임
- 악취방지법 제7조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측정을 위하여 ○○○○○소의 담당팀에 의뢰하여 2025.12.24.(수)13:30분에 악취 측정 장비로 악취시료를 채취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검사 결과 “적합”으로 통보되어 민원인에게 안내하였으며 그러나 축사 경영인에게 퇴비장의 악취 차단 담장 등을 설치하여 악취 감소에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민원을 마무리



민원 요지

- 민원인은 상주시 ○○동 ○○○-○○번지 ○○조경농장을 운영하면서 조경용 소나무를 가꾸어 오다가 2024년 10월 12일 14시 48분경 현장에서 전지한 소나무 가지 및 상태가 좋지 않은 소나무 등을 소각하다가 신고되어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되어 소나무류 이동이 제한되어 불가피하게 소각한 행위로 주장하면서 과태료 부과 취소를 요구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정부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의 고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방제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동 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재선충 방제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고 제10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나무류의 이동이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동 법 제16조 1항에 “이 법은 재선충 방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3항에 감염목 등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소각 파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상주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 제9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상주시 ○○동을 소나무류 반출 제한구역으로 지정(상주시 공고 2024-1217호, 2024. 9. 11.)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 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동 법 제16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소나무류를 소각한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이 제한됨으로서 조경용 소나무류의 소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음
- 따라서 담당 부서에 소나무류 소각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에 대하여 부과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담당 부서에서는 과태료 40만원과 가산금을 부과 취소함으로써 민원을 해결

민원 요지

- ○○마을에 인접한 축사(상주시 ○○동 ○○○-○번지)의 분무 방역으로 가장 가까운 고령의 민원인 주택에 하얀 가루 같은 축사 방역 약이 집안까지 들어와 호흡기 질환으로 병원에 다니는 등 일상생활에 피해를 받고 있다고 구제를 요청

사실관계 및 조치결과

- 딸과 함께 거주하는 고령의 민원인은 ○○마을에 닿아있는 축사와 가장 가까운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발견되는 하얀 가루 등이 축사의 방역 약품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말 축사 현장 방문 당시에는 현장에서 분무방역 약품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축사주도 분무형 약품을 치지 않는다고 하여 좀 더 지켜보기로 하여 민원이 이월되었음
- 이후 민원인의 자택 방문시 민원인이 사진을 찍어 제시한 (주)○호의 “○○○프로” 제품은 분무로 방역하는 방역 약품이 아니라 가축 사료에 첨가하여 가축에게 급여하는 복합 미생물 생균제로 확인되었으며 축사 주인도 분무 방역은 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여 집안에 쌓이는 먼지 등이 방역 약품 가루로 오해된 여지가 있음
- 2025년 4월에 ○○마을 통장과 축사 주인도 함께 민원인 자택을 방문하여 민원인이 오해하는 “○○○프로” 제품은 분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 가축 사료에 섞어 먹이는 미생물 생균제라고 설명하였고, 축사주도 냄새 등으로 인한 생활 불편에 대하여 사과하고 분무 가루 소독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민원인도 이해하였으며 향후 마을 통장이 방역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여 축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노력한다고 합의함으로써 민원을 마무리



옴부즈맨 활동 및 홍보

I. 옴부즈맨 활동

II. 옴부즈맨제도 홍보

옴부즈맨 활동 및 홍보

I 옴부즈맨 활동

2024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공표

- 근거 :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시기 : 2025. 2. 27.
- 방법 : 보고서 제작(200부), 상주시 홈페이지 게재, 언론 홍보

상주시청 상주시의회 관공상주 전라민원상구 아산시청 국가상청 홈으로 사이트맵

상주정보마당 정보공개청구 정보목록 행정정보공표목록 공공데이터개방 상주아카이브 정보보호

시민의 관심과 공감으로 역사와 기록을 함께 만들어가는 상주정보마당

행정정보공표목록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개

전체 9건/1페이지

| 번호 | 제목 | 등록자 | 등록일 | 조회 | 첨부 |
|----|--------------------------|-----|------------|----|----|
| 9 | 2024년도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 정진욱 | 2025-02-27 | 4 | |
| 8 | 2023년 상주시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 | 사후동 | 2024-02-28 | 41 | |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게재 >

국민권익위원회 Basic Commission Civil Rights Commission

정책·정보 민원·신고 국민참여 뉴스·소식 정보공개 위원회소개 검색어를 입력해 주세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소개 자치법규연 및 운영안내 조례제정사례 민원처리사례 운영상황보고서 채용공고 소식

각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 7건

| 번호 | 제목 | 첨부파일 | 담당부서 | 등록일 | 조회수 |
|----|------------------------|------|---------|------------|------|
| 7 | (경북 상주시) 2024년 운영상황보고서 | | 민원조사기획과 | 2025-03-24 | 241 |
| 6 | (경북 상주시) 2023년 운영상황보고서 | | 민원조사기획과 | 2024-05-14 | 532 |
| 5 | (경북 상주시) 2021년 운영상황보고서 | | 민원조사기획과 | 2022-04-15 | 1513 |

■ 권익위 주관 협의회 및 교육 참석

<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 >

○ 일시 : 2025. 4. 9.(수) / 장 소 : 서울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연구포럼 >

○ 일시 : 2025. 4. 25.(금) / 장 소 : 서울시 서울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 2025년 제1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 >

○ 일시 : 2025. 6. 26.(목) / 장 소 :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실



< 제3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포럼 >

○ 일시 : 2025. 9. 11.(목) / 장 소 :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4층 대회의실



< 영남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협의회 >

○ 일시 : 2025. 11. 25.(화) / 장 소 : 대구시 대구 EXCO 서관 3층 회의실



< 제4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혁신포럼 >

○ 일시 : 2025. 12. 4.(목) / 장 소 :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서울역4층 대회의실



< 2025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역량강화 교육 >

○ 일시 : 2025. 12. 17.(수) / 장 소 : 서울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고충민원 상담 및 현장활동





II 음부즈맨제도 홍보

음부즈맨 제도 및 운영홍보

< 외서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4. 3.(목) 10:30

○ 장소 : 외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동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일시 : 2025. 4. 10.(목) 11:00

○ 장소 : 동문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북문동 농촌지도자회 >

○ 일시 : 2025. 6. 23.(월)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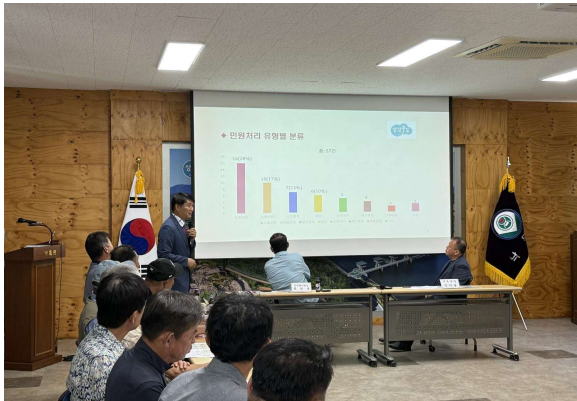
○ 장소 :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낙동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7. 10.(목) 11:00

○ 장소 : 낙동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화서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8. 1.(금) 11:00

○ 장소 : 화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화남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8. 8.(금) 11:00

○ 장소 : 화남면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내서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8. 12.(화) 10:30

○ 장소 : 내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모동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9. 10.(수) 11:00

○ 장소 : 모동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모서면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9. 24.(수) 11:00

○ 장소 : 모서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함창읍 이장협의회 >

○ 일시 : 2025. 10. 16.(목) 11:00

○ 장소 : 함창읍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홍보물 · 배너활용



홍보물 비치대 및 배너 홍보

상주소식지(굿모닝상주) 게재

2025년 4월 호

2025년 12월 호

온라인 매체 홍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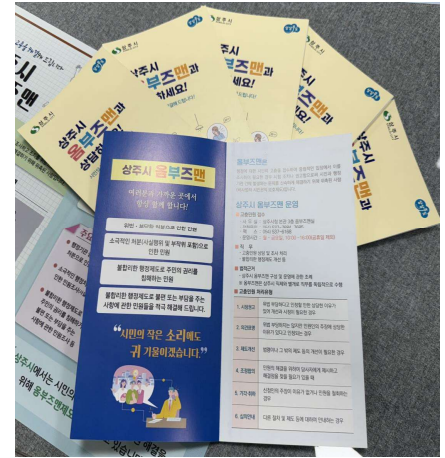


상주시 대표 홈페이지 배너 홍보



상주시 SNS 홍보

리플릿 홍보



전단지 홍보



오늘의 상주시 키워드

상주시

2025-03-17(화)

임기제 상반기 상주교육지원청 경상북도회 웰코바리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 전지훈련 무가당인 500만원 청리복지회관
 수여식 300만 건설국장 기탁 주선동 유치 웰코바청수드라이
 중재 건설도시국장 5대 위촉 대상 임용장 300만원씩
 지원 국가대표팀 볼꽃 축구 음부즈맨 관리자
 민방위 2025 전시 공무원 장학금 4명 상주시장학회 기동반 임아
 특산리 와인부문 간부 견학 기부 무단 주류대상 대한민국 철회
 행동교육 영예 수상 17 산하 상주백합어머니장학회 국장 지역
 상주상수도사업소 대비 회의 교육지원청 상주음부즈맨 반출 도석
 전문 교육생 경북도회 운영위 방역 수여 쾌거 조기 웰코바청수드라이슬
 전임자 상주-예천 대표팀 경북 상주시보건소 한국주류대상 다량 허가
 전통향토음식 아카데미 대표팀 경북 상주시보건소 한국주류대상 다량 허가
 경주환경 상주시의장 모리 담금철 상주도서관 대상지

경상매일신문

뉴스

주선동 제5대 상주시 음부즈맨 위촉

김용목 기자 kimym3396@ksmnews.co.kr 입력 | 수정 2025.03.16 20:04



[경상매일신문=김용목기자] 상주시는 지난 13일 제5대 상주시 음부즈맨에 주선동 前 상주시 건설도시국장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주선동 음부즈맨은 상주시에서 행정복지국장과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40여 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 풍부한 행정 역량을 쌓았다.

특히 시민 고충 해결과 집단민원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주선동 음부즈맨은 "시민의 고충사항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고충과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음부즈맨의 활동을 통해 시민과 행정기관 간 신뢰를 높이고 민원 해결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다.

상주시, 주선동 전 건설국장 제5대 읍부즈맨 위촉

홍 환경연기자 | 승인 2025.03.16



상주시는 지난 13일, 주선동 전 상주시 건설도시국장을 제5대 상주시 읍부즈맨에 위촉했다. 주선동 읍부즈맨은 상주시에서 행정복지국장 겸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하며, 4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쌓은 풍부한 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 고충 해결과 집단민원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시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힘을 계획이다.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 위촉...주선동 전 상주시 건설도시국장

김철희 기자 | 승인 2025.03.13 22:53



주선동 읍부즈맨(왼쪽)과 강영석 상주시장. 사진=상주시 제공

[상주(경북)=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 경북 상주시가 13일 제5대 상주시 읍부즈맨에 주선동 전 상주시 건설도시국장을 위촉했다.

주선동 읍부즈맨은 상주시에서 행정복지국장 겸 건설도시국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40여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행정 역량을 쌓았다.

시민 고충 해결과 집단민원 처리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주선동 읍부즈맨은 "시민의 고충사항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면서 역지사지의 생각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법을 찾아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시 옴부즈맨 홍보 낙동면에서 실시

경상북도 유일의 옴부즈맨

온라인 뉴스룸
2025-07-11 16:16:15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PEDIEN] 상주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농림산림,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옴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7월 10일 11시에는 낙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이장 등 40여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외서면 등 여러곳에서 읍면동 순회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옴부즈맨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경안일보

HOME > 사회

상주시, 낙동면서 시민 고충민원 해결 옴부즈맨 홍보

▲ 김상도 기자 | 승인 2025.07.13 20:29

[경안일보=김상도기자] 상주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옴부즈맨은 도로교통, 농림산림,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 옴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해 읍면동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에는 낙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이장 등 40여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외서면 등 여러곳에서 읍면동 순회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옴부즈맨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상도 기자 ga7799@gailbo.com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 해결드립니다!”

상주시, 낙동면에서 읍부즈맨 홍보

황지현 기자 news5530@naver.com

등록 2025년07월11일



▲ 상주시, 낙동면에서 읍부즈맨 홍보

(데일리대구경북뉴스=황지현 기자)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읍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농림산림,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읍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7월 10일 오전 11시에는 낙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이장 등 40여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읍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일간경북신문

상주, 읍부즈맨 홍보 실시

상주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읍부즈

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농림산림,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읍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012면 지역

도민일보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017면 종합

상주시, 낙동면에서 읍부즈맨 홍보 실시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읍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교통, 농림산림, 환경, 보건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어 시민들의 '고충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읍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낙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이장 등 40여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읍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10일 낙동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낙동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이장 등 40여 명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읍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의서면 등 여러곳에서 읍부즈맨 순회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읍부즈맨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수연 기자

경안일보

상주시, 낙동면에서 시민 고충민원 해결 읍부즈맨 홍보

상주시는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민원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2016년도부터 읍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읍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3일 상주시 제5대 읍부즈맨으로 위촉된 주선동읍부즈맨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위해 홍보물을 새로이 제작 배포하고 관내 이장회의, 농촌지도자회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의 등에 참석해 읍부즈맨을 순회하며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년 7월 14일 월요일 007면 경북

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읍부즈맨 제도를 안내하며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동안 의서면 등 여러곳에서 읍부즈맨 순회 홍보를 진행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읍부즈맨 운영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 시민들의 고충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김소연 기자 jk7700@kbc.com

부 록

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II.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III.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IV.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규정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9. 25.)

(제정) 2015.10. 2. 조례 제10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옴부즈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고충민원”이란 상주시(이하“시”라 한다) 및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하“수임·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 2.“민원인”이란 시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3.“민원”이란 민원인이 시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민원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장 옴부즈맨 기능·구성 등

제3조(구성) ① 옴부즈맨의 정수는 1명으로 한다.

- ② 옴부즈맨은 시 소속하에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 ③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하고, 후보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건축사, 세무사, 법무사, 회계사, 노무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④ 옴부즈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옴부즈맨이 결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옴부즈맨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되는 옴부즈맨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조의2(추천위원회) ① 제3조에 따른 옴부즈맨의 구성을 위하여 상주시 옴부즈맨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시장, 인사업무 담당국장
2. 상주시의회 의원 2명
3. 변호사, 학교장(초·중·고),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중 3명

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추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④ 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추천위원회는 추천이 끝난 후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서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의3(공개모집절차) 제3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와 시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위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신청기간
2. 신청자격
3. 신청서류
4. 신청서 접수 및 제출방법
5. 후보자 결정방법
6.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능) ①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신청한 고충민원의 조사
2. 옴부즈맨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조정·중재
3. 시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권고
4.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5. 권고, 의견표명 등에 대한 내용의 공표
6.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조정·중재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맨에게 요구한 사건의 조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맨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시의회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기구 직원의 근무내용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맨의 행위에 관한 사항
5. 판결, 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6. 도 및 중앙부처에 민원을 제출하여 이미 진행중이거나 결정된 사항

제5조(직무 관할) 옴부즈맨이 직무 및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
2. 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

제6조(옴부즈맨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맨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제7조(겸직금지) 옴부즈맨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정당과 관련된 직위
2. 행정기관 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옴부즈맨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제9조(옴부즈맨의 제척·기피·회피) ① 옴부즈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옴부즈맨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 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3.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 4. 옴부즈맨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 5. 옴부즈맨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 ③ 옴부즈맨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맨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등

제11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시민은 옴부즈맨에게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맨과 국가옴부즈맨에게 중복으로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고충민원의 접수) ① 옴부즈맨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 3.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 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옴부즈맨이 고충민원 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민원의 이첩)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 중에서 관계행정기관 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옴부즈맨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옴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고충민원 신청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조사의 방법) ① 옴부즈맨은 제14조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요구 또는 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옴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 ③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옴부즈맨은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1.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이거나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5.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6. 제5조에서 정한 관할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항
7. 그 밖에 옴부즈맨이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17조(합의의 권고) 옴부즈맨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장(이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단체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9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옴부즈맨은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 그 밖의 정책·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20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단체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단체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 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맨이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결정의 통지) 옴부즈맨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단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옴부즈맨로부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단체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재심의) 단체장은 옴부즈맨이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거나 특별한 사정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옴부즈맨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옴부즈맨은 해당 사안을 재심의할 수 있다.

제24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시 또는 수임·수탁기관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옴부즈맨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옴부즈맨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제27조(사무국) ① 옴부즈맨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옴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업무를 보좌한다.

② 옴부즈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예산지원) 시장은 옴부즈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1014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563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9. 25.)

(제정) 2016. 2. 29. 규칙 제5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상주시 옴부즈맨(이하“옴부즈맨”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 삭제

제4조(고충민원 신청서 등)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인이 구술하는 고충민원내용을 듣고 작성하여 신청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맨이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원할 때에는 별지제5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서의 보완) ① 옴부즈맨은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맨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맨은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옴부즈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제7조(정당한 사유 등) ① 조례 제14조제2항제3호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고충에 관계되는 사실이 1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알려진 때
2. 천재지변 등으로 신청기간을 경과한 때
3. 고충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계속되고 있을 때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인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유념하여야 한다.

제8조(고충민원조사 실시의 통보)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시의 소관부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 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고충민원조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처리 지연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민원조사 제외 등 통보)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조사 제외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복·단순 고충민원의 처리) ① 읍부즈맨은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는 이후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읍부즈맨은 고충민원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시의 관계 부서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읍부즈맨은 신청인의 성명·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신분증의 휴대 등) 읍부즈맨 사무국의 직원이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9호서식의 증명서를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민원조사 결과의 통보) 조례 제21조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인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고충민원조사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합의의 권고) 조례 제1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 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게 한 후 읍부즈맨이 이를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과 조례 제19조에 따른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 권고(의견표명)서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

제15조(권고, 의견표명의 재심의) 시는 조례 제18조 및 조례 제19조에 따라 권고 또는 의견 표명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읍부즈맨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문서로 통보한다. 이 경우 읍부즈맨은 해당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6조(처리결과에의 통보) 조례 제22조에 따른 처리결과에의 통보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 권고(의견표명) 조치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제17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① 읍부즈맨은 조례 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대상인 시 및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읍부즈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 및 소속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운영상황의 보고는 매년 12월말까지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운영상황의 공표는 시보와 시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9조(사무기구 설치 등) 조례 제27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기구는 공보감사실 소속으로 두고 사무의 운용은 읍부즈맨이 관할한다.
2. 사무기구에는 2명 이내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
3. 사무기구 직원은 읍부즈맨의 활동 및 그에 관한 사무를 지원한다.

제20조(경비)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읍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다음과 같다.

1. 읍부즈맨의 보수
2.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여비(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금액)
3. 급량비(급식비)
4. 그 밖에 읍부즈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읍부즈맨의 보수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읍부즈맨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퇴직급여, 4대보험(「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소득세·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인의 사용) ① 읍부즈맨이 발송·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인을 새겨 사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부즈맨 공인의 사용은 「상주시 공인 조례」 및 「상주시 공인 조례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읍부즈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543호, 2016.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41호,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68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

②상주시 읍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감사실”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규칙 제708호, 202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발췌)

(시행 2025. 1. 21.) (법률 제20712호, 2025. 1. 21., 타법개정)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와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①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 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감사원, 관계 행정기관등의 감독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감사를 의뢰받은 경우 그 처리결과를 감사를 의뢰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 및 부패방지 업무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1조(과태료) ① 제62조의2제4항(제65조 및 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출석, 진술서·자료의 제출, 사실·정보의 조회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의2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공공기관의 장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공무원의 적극행정 면책규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시행 2025. 12. 30.) (대통령령 제3599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요구 또는 문책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3조에 따른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18조 제1항에 따른 징계 등의 처분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16조(징계등 면제) ①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않는다.

상주시 자체 감사규칙

(시행 2021. 12. 31.) (전부개정)2021. 12. 31. 규칙 제659호

제13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시장은 감사결과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등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8조의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은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상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시행 2021. 9. 30) (일부개정)2021. 9. 30 훈령 제376호

제5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합니다!

상주시 옴부즈맨

대표전화 : 054)537-7684, 7685

팩 스 : 054)537-6168

경상북도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3층)

상주시 옴부즈맨이
함께합니다!

상주시 옴부즈맨실

대표전화 : 054) 537-7684, 7685

팩 스 : 054) 537-6168

경북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3층)